

# 수강꾸러미 제도

## 1. 수강꾸러미 제도란?

- 수강꾸러미 제도는 예비 수강신청으로 수강하고자 희망하는 교과목을 본 수강신청 기간 전에 장바구니에 넣어두는 시스템임. 수강꾸러미 신청된 교과목 중 수강정원 이하로 신청된 교과목을 일괄 수강신청 처리하여 본 수강신청기간에 학생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됨
-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

## 2. 수강꾸러미 신청기간

- 2016년 7월 25일(월) 10:00 ~ 7월 29일(금) 16:00 (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)

## 3. 대상과목

- 가. 1학기 (신입생을 위해 특정 교과목은 제외)
  - 전공 (1학년 개설과목 제외), 교직, 교양선택(사이버강의 제외), 일반선택, 융합교과목
- 나. 2학기
  - 전공교과목, 교직, 교양선택(사이버강의 제외), 교양필수, 일반선택

## 4. 유의사항

- 가. 수강꾸러미 제도는 예비 수강신청으로 수강하고자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꾸러미 신청 기간에 수강꾸러미에 담아두는 제도로 수강정원에 상관없이 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(선착순의 아님)
- 나. 수강꾸러미 신청기간에 수강정원 이하로 신청한 과목은 일괄 수강신청 처리되며, 수강꾸러미 신청인원이 수강정원 보다 1명이라도 초과한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 처리되지 않으니 **수강처리 되지 않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함**
- 다. 수강꾸러미 결과는 2016년 8월 10일(수) 10:00부터 확인 가능하며, 종합정보시스템 → '수강꾸러미 신청 결과 조회' 화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 가능함
- 라. 수강신청 기간에는 수강꾸러미로 수강 신청된 과목의 삭제 및 남은 학점에 한하여 추가로 수강 신청 가능함

# 수강허가제도 안내

## 1. 수강허가제도

- 전공, 교양필수, 교직 교과목을 미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정원이 없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로써, 학과(전공)에서 과목별 증원 가능 여석 및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수강신청 가능한 인원만큼 수강할 수 있는 제도

## 2. 신청기간

- 수강정정기간 : 2016년 9월 1일(목) ~ 9월 7일(수) 12:00까지

## 3. 대 상 자

- 미졸업생을 포함한 3학년 5학차 이상 재학생(1,2학년은 수강허가대상자에서 제외)

## 4. 대상과목

- 전공, 교양필수, 교직 교과목(교양선택, 일반선택, 외국인교원 담당 교과목은 제외)

## 5. 수강허가 신청 절차

- 수강허가서 작성 → 교과목 담당교수 상담 후 확인 받기 →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사무실 제출 → 학과는 제출된 수강허가서 수합 및 강의실 수용인원 파악 후 학과장 날인 → 당일 수업학적팀 일괄 제출
- 담당교수가 지정되지 않은 교과목은 교과목 개설학과에 제출하여야하며, 담당교수와 개설학과의 모두 지정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수업학적팀(종합민원센터 A3-100로)으로 제출

## 6. 수강허가서 제출기한 : 2016년 9월 7일(수) 12:00까지

## 7. 기타사항

- 가. 학과에서는 수강허가서를 신청받기 전 강의실 여건을 미리 파악하여 수강허가 가능 인원을 사전에 확인
- 나. 수업시간표상의 담당 교수가 지정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 개설학과의 학과장 확인 후 제출

## 8. 유의사항

- 가. 교양필수 수강허가서 학과 확인 장소
  - 참살의길, 가톨릭사상, 인성캠프 : 성토마스아퀴나스관(A2) 113호 인성교육원 850-3078
  - 글쓰기와 말하기 : 성토마스아퀴나스관(A2) 407호 850-3468
  - 실용영어 I, II : 성토마스아퀴나스관(A2) 300호 850-3460

# 수강허가서

## 1. 학생 정보

소속학과		복수전공	
학 번		성 명	
학년/학차	( )학년 ( )학차	연 락 처	
현재수강 신청학점			

## 2. 교과목 정보

과목번호	-	과목명	
담당교수명		학 점	
교과구분	전공( ), 복수전공( ), 교양필수( ), 교직( )		

## 3. 신청 사유

20 . . . . .

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(인)

교과목 개설학과(학과장) 확인 (인)

※ 유의 사항

- 수강허가는 3,4학년(미졸업생 포함)만 신청 가능

# 학점이월제도

## 1. 학점이월제도

- 본인의 학기별 최대수강신청학점 기준으로 수강신청 완료 후 2학점 또는 1학점이 남을 경우, 해당 미신청 학점(1~2학점)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

## 2. 이월학점 처리 방법

- 직전학기 미활용 학점이 2학점 이하인 경우에만 이월 처리됨(3학점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월학점 없음)
- '이월학점 = 직전 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 - 수강신청학점 - 기타성적'으로 이월학점이 2학점 이하로 남아 있을 경우 다음 학기로 이월됨
- 수강포기로 인한 잔여학점은 학점이월이 불가하며, 이월학점을 다음 학기에 미활용시 자동 소멸됨  
즉, 이월학점은 연속해서 받을 수 없음  
예) 해당학기 수강신청 시  
→ 2014학년도 1학기 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7학점이고, 수강신청 및 기타성적으로 취득한 학점이 15학점일 경우 2학점이 2014학년도 2학기로 이월 처리됨. 2014학년도 2학기에는 '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'이 '최대수강신청 학점 17학점 + 이월학점 2학점'으로 총 19학점을 수강신청할 수 있음. 하지만 2014학년도 2학기에 17학점을 수강신청 할 경우 2학점은 2015학년도 1학기로 이월되지 않음.

## 3. 유의사항

- 가. 성적우수(4.0 이상) 또는 복수전공(교직복수자)자로 추가 3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은 추가 수강신청 학점 3학점에 이월 2학점까지 최대 5학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, 성적우수자가 복수전공을 하여도 최대 3학점만 추가 신청됨
- 나. 성적우수자의 경우 추가 3학점 포함하여 잔여학점이 1~2학점 발생 시 다음 학기에 학점이월이 적용됨
- 다. 복수전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추가 3학점을 부여 받았지만 추가학점을 다 사용하지 않고, 복수전공으로 1학점 또는 2학점만을 수강신청 할 경우에 추가 3학점에서 발생하는 잔여 2학점 또는 1학점은 이월학점에 적용되지 않음. 다만, 추가학점을 제외하고, 본인의 최대수강신청가능 학점에서 잔여학점 1~2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점이월이 가능함
- 라. 교직을 2개 이상 이수하는 학생(주전공, 제1복수전공 모두 교직이수자)은 매 학기 3학점 추가 신청 가능(※ 사범대 소속 학생은 제외)하며, 이월학점에는 적용되지 않음.
- 마. AP(대학과목선 이수), 교필대체인정, 기타 프로그램 등으로 학기 중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 이외의 추가학점을 인정받을 경우, 해당 학기 최종 취득학점에 포함되므로 이월 학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월학점 계산 시 유의하여야 함
- 바. 직전학기 학사경고자(평점평균 1.5미만)에게는 다음 학기에 학점이월이 적용되지 않음

## 4. 이월학점 확인 방법

-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→ 수업 → 수강 → '수강확인서조회' 메뉴에서 확인 가능

# 수강포기 제도

## 1. 수강포기 제도

- 수강정정 기간 이후 수강 신청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
-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

## 2. 신청 기간

- 2016년 9월 22일(목) 10:00 ~ 9월 26일 17:00 까지
- 매학기 개강 후 4주째 시행되며, 학사공지를 통해 사전공지 될 예정

## 3. 신청 방법

- 가. '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수업 → 수강 → 수강포기 신청' 메뉴를 통해 포기하고자 하는 과목 체크 및 수강포기 사유 입력 후 '저장'버튼 클릭
- 나. 수강포기 기간 내에 수강포기 신청 교과목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, 수강포기 기간 종료 이후 수업학적 팀에서 일괄 수강포기 처리

## 4. 유의사항

- 가. 수강포기 교과목은 학점에 상관없이 학기당 최대 2과목까지 포기 가능함
- 나. 수강포기 신청시 최대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최소신청학점(매학기 12학점, 8학차는 9학점)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
- 다. 수강포기를 한 교과목의 학점은 다음학기 이월되지 않음
- 라. 수강포기자자도 수강포기 학점을 제외한 수강신청 학점이 최소신청학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 장학사정에 포함됨
- 마. 수강포기 신청 후 추가 수강신청이 불가하며, 수강포기 신청 교과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함

# 재수강 제도

## 1. 재수강 제도

-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79점 이하인 경우 동일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는 제도
-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일 경우에는 동일교과목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, 실격교과목의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함
-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

## 2. 재수강 신청기간

- 실격교과목 재수강 신청 :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부터 수강정정 기간까지 수강신청 가능
- 취득교과목 재수강 신청 : 2016년 8월 26일(금) 및 수강정정 기간(2016.03.02(수) ~ 03.08(화))에 수강신청 가능

## 3. 유의 사항

- 재수강으로 취득한 최종 성적만 인정되며, 최대 성적은 A(94점)이하로 함
- 기존에 이수했던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재수강 과목의 성적이 최종 학점처리 된 이후 자동 소멸되며, 재수강 한 학기의 성적으로 취득 처리됨  
예) 2015학년도 1학기 이수했던 교과목의 성적이 75점이며, 2015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이 '65점' 또는 '실격' 일 경우, 2015학년도 2학기 성적 확정 이후에 2015학년도 1학기에 이수했던 교과목은 자동 '재수강포기'처리 되며, 2015학년도 2학기에 '65점' 또는 '실격'으로 성적증명서에 표기 됨
- 재수강을 할 경우 취득 학점 계산에 유의하여야 함  
예) 재수강 신청시 학점 계산 방법
  - 재수강 3학점 신청(실격(F) 교과목 재수강시)
    - 현재 총 취득학점 118학점 => 재수강 성적 취득시 총 취득학점은 121학점 임
    - 현재 총 취득학점 118학점 => 재수강 성적 실격(F)시 총 취득학점은 118학점 임
  - 재수강 3학점 신청(60점 이상 이수 교과목 재수강시)
    - 현재 총 취득학점 118학점 => 재수강 성적 취득시 총 취득학점은 118학점 임
    - 현재 총 취득학점 118학점 => 재수강 성적 실격(F)시 총 취득학점은 115학점 임

## 보강주간 안내

### 1. '보강주간'이란?

- 정규학기의 수업시간은 총 16주로 편성되며, 15주차(2016년 12월 8일(목) ~ 12월 14일(수))에는 수업 결손일의 보강강의가 운영되는 보강주간으로 운영됨

### 2. 공휴일 휴보강 일괄배정 일자 확인 방법

- '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 → 수강 → 휴보강조회(학생용)' 메뉴를 통해 개강 4주차 이후에 공휴일 보강 일괄배정 결과를 확인 가능함. 다만, 교과목 담당교수의 요청에 따라 보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보강주간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여야 함

수업결손일		
공휴일	일자	요일
추석	2016.09.14	수
추석	2016.09.15	목
추석	2016.09.16	금
개천절	2016.10.03	월

⇒

보강일		
일자	요일	수업시간
2016.12.14	수	수업결손일과 동일
2016.12.08	목	
2016.12.09	금	
2016.12.12	월	